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9. 16(금) 10:00

제23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04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9. 6.
- 라. 회부일자 : 2022. 9. 6.

II.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금천구의회 의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관련서류 : 2021회계연도 결산서(안)

IV.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1. 푸른미래도시국 결산 총괄

가. 세입 총괄

(단위: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 (B/A)
계	13,801,356,000	14,822,659,470	13,991,683,880	94.3%
주 택 과	814,395,000	1,330,696,520	907,099,900	68.1%
도시계획과	415,000,000	416,164,720	416,164,720	100%
주거정비과	5,067,420,000	5,067,638,860	5,067,636,460	99.9%
공원녹지과	7,298,935,000	7,393,000,770	7,375,588,110	99.7%
건축과	205,606,000	615,158,600	225,194,690	36.6%

나. 세출 총괄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집행률 (B/A)
계	48,188,543,550	25,999,860,931	20,610,517,470	1,419,872,803	53.9%
주 택 과	549,788,000	373,262,500	80,000,000	76,793,270	67.8%
도시계획과	2,661,407,700	1,690,098,920	533,138,860	429,077,527	63%
주거정비과	12,281,703,540	6,880,787,761	5,264,166,440	70,007,195	56%
공원녹지과	32,121,288,310	16,573,398,660	14,712,534,170	788,148,041	51.5%
건축과	574,356,000	482,313,090	20,678,000	55,846,770	83.9%

다. 집행잔액

○ 예산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원)

부서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계	48,188,543,550	1,419,872,803	391,346,247		84,110,620
			235,661,250	708,754,686	
주택과	549,788,000	76,793,270	14,320,820		9,328,000
				53,144,450	
도시계획과	2,661,407,700	429,077,527	9,206,947		
			1,750,000	418,120,580	
주거정비과	12,281,703,540	70,007,195	679,350		
				69,327,845	
공원녹지과	32,121,288,310	788,148,041	366,973,840		43,499,030
			233,911,250	143,763,921	
건축과	574,356,000	55,846,770	165,290		31,283,590
				24,397,890	

라. 푸른미래도시국 집행률 저조사업

(단위 : 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액(가)	지출액(나)	이월액(다)	집행잔액 (가-나-다)	집행률 (나/가)
주택과	동네방네 꿈나무들의 신나는 구정체험	6,120,000	-	-	6,120,000	0%
	위법건축물정비	5,590,000	3,662,100	-	1,927,900	66%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86,456,000	4,759,000	80,000,000	1,697,000	6%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10,672,000	7,048,100		3,623,900	66%
	생활SOC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101,512,000	57,597,900		43,914,100	57%
	도시정책 공유를 위한 도시학교 운 영	11,240,000	4,841,700		6,398,300	43%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계획 수립	38,000,000	24,447,600		13,552,400	64%
	저층주거지 맞춤 관리 추진	160,000,000	106,400,000		53,600,000	67%
	G밸리 유니버설디 자인 시범가로 조 성	820,320,000	476,692,390		343,627,610	58%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8,200,000	73,844,800	138,200,000	64,355,200	53%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31,418,000	52,384,000	131,418,000	79,034,000	40%
	금천구심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761,800,000	433,980,000		327,820,000	57%
주거정비과	계	9,005,600,540	3,741,997,450	5,247,534,940	16,068,150	42%
	사흥5동 별장길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720,000,000	217,406,880	494,342,000	8,251,120	30%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7,645,850,540	3,104,424,120	4,539,712,940	1,713,480	41%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639,750,000	420,166,450	213,480,000	6,103,550	66%
공원녹지과	금천폭포공원 재정비	300,000,000	139,920,000	139,920,000	20,160,000	47%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9,750,000,000	2,178,000	9,747,822,000	0	0%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	950,449,000	74,327,050	876,121,640	310	8%
	도시공원·놀이터 내 CCTV 설치	300,000,000	0	300,000,000	0	0%
	목화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	30,000,000	13,691,500	13,691,500	2,617,000	46%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400,000,000	0	400,000,000	0	0%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135,000,000	13,526,000	121,474,000	0	0%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조성	1,665,000,000	726,445,000	931,554,990	7,000,010	44%
	호암산자락 생활체육 공원조성	500,000,000	10,766,000	489,234,000	0	2%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신축)	1,200,000,000	57,760,600	1,142,239,400	0	5%
건축과	위법건축물 예방 관리	50,000	0	0	50,000	0%
	주민참여 건축행정 추진	27,048,000	13,965,000	0	13,083,000	52%
	금천건축안전센터 운영	43,300,000	24,840,000	0	18,459,180	57%

2. 예산의 전용

(단위: 천원)

구분	부서별	건수	금 액	사유
계		1	23,000	
전용	주거정비과	1	23,000	-도시재생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실내공간 조성 공사비 확보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단위: 천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계	48	20,610,517	24	7,015,639	24	13,594,878
주택과	1	80,000	1	80,000	-	-
도시계획과	6	533,139	1	315,220	5	217,919
주거정비과	26	5,264,166	15	4,066,236	11	1,197,930
공원녹지과	14	14,712,534	6	2,533,505	8	12,179,029
건축과	1	20,678	1	20,678	-	-

가. 명시이월 사업 현황 : 24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 현액	원인 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주택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사무 관리비	86,456	4,759	80,000	[연도 내 지출 불가] 현재 적정성 검토 신청 시, 재건축 불가 판정이 될 우려가 있어 가급적 안전진단 법령 변경동향 파악 및 의뢰 시기 조정 필요(서울시에서 국토부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관련 법 개정 요구 중)
도시 계획과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760,000	730,715	315,220	집행시기 미도래 (2022.12월 집행예정)
주거 정비과	생활밀착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설비	850,000	801,744	1,169	국토교통부 정산제도 변경에 따른 회계법인 검증절차 이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기 미도래('22. 2.)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행사실비지급 원	2,000		2,000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선진지 견학 미시행으로 사업비 이월
		민간경상 사업보조	13,000	6,000	7,000	주민협의체 구성('21.5) 지연에 따른 상반기 운영비 이월
		시설비	400,000		400,000	22년 예산 선교부에 따른 공사비 이월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78,470		78,470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22)
		사무관리비	249,738	126,862	122,901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22)
		공공운영비	17,415	3,312	14,102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22)
		행사운영비	51,639	5,265	46,374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22)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400	5,546	4,800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22)

		연구용역비	181,339	114,591	66,748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 22)
		행사실비지급 원	2,872		2,872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 22)
		민간경상 사업보조	147,547	59,921,	87,000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 22)
		시설비	3,223,000		3,223,000	국토부 실행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21→' 22)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공공운영비	4,800		4,800	20년 명시이월 선집행에 따른 21년 공공요금비 이월
		행사운영비	5,000		5,000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행사 축소 및 온라인 방식 대체 추진에 따른 행사추진비 이월
공 원 녹지과	새재미어린 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950,449	869,890	80,558	[연도 내 집행 불가] 부지 내에서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어 지반보강공사 선행이 불가피하여 후속 조경공사도 순연
	도시공원· 놀이터 내 CCTV 설치	시설비	300,000		300,000	[집행시기 미도래] '21. 7월 특별교부세 교부 사업으로 주민협의 등행정절차 이행 필요
	노후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시설비	400,000		400,000	[연도 내 집행 불가] 특별조정교부금이 '21. 11.26. 교부되어 '22.1. 설계용역 시행코자 함
	빈집활용 도시정원 조성	시설비	135,000	13,526	121,474	[집행시기 미도래] '21. 9. 보조금이 일부 교부되었고, '22. 1. 보조금이 추가 교부될 예정으로, '22. 3. 공사발주 예정
	호암산자락 생활체육 공원조성	시설비	500,000	17,416	489,234	[연도 내 지출 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완료 후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공사 추진 가능
	개발제한구역 42관리초소 리모델링 (신축)	시설비	1,200,000	71,846	1,142,239	[집행시기 미도래] '21. 7. 특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설계 진행중이나, 공사의 연도 내 집행 불가
건축과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 진단 등 지원	시설비	32,061	11,308	20,678	'21.11. 시비교부금이 교부 결정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

나. 사고이월 사업 현황 : 24건

(단위:천원)

부서명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 산 현 액	원인행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 월 사 유
도시계획과	생활SOC 확충을 위한 공공부지 복합화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100,000	80,229	24,129	집행시기 미도래 (2022.8월 집행예정)
	가산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0	70,000	10,500	집행시기 미도래 (2022.7월 집행예정)
	저층주거지 맞춤 관리 추진	연구용역비	160,000	152,000	45,600	집행시기 미도래 (2022.7월 집행예정)
	독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138,200	132,501	58,656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 인한 용역 지연
	가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	131,418	131,417	79,033	반대 주민 민원으로 인한 지연
주거장비과	금천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사무관리비	65,400	65,400	1,012	집기류 임차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3.)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2,770	62,770	14,450	스팀청소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4.)
	시흥5동 별장길 일대 골목길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27,600	27,600	23,000	상권활성화 용역 준공기한미도래(22.12.)
		행사운영비	15,000	15,000	15,000	상권활성화 용역 준공기한미도래(22.12.)
		시설비	260,000	251,748	47,342	시계탑 조성공사 준공기한 미도래(22.8.)
	금하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무관리비	312,187	189,312	35,614	집기류 임차용역 준공기한미도래(준공 22.2.) 금하마을집수리아카데미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3.)
		행사운영비	96,639	50,265	15,416	축제용역 코로나로 인해 사업 이월

		연구용역비	226,464	226,464	85,000	에너지마을계획 수립 및 지원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7.)
		시설비	1,549,016	1,366,521	757,415	에코에너지센터 착공지연으로 자재비 이월
	독산2동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46,600	46,445	3,680	집기류 임차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2.)
		연구용역비	500,000	500,000	200,000	준공기한 미도래(준공 22.3.)
공원녹지과	생활권공원 정비	시설비	165,000	164,853	38,420	부지내에서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어 부지 중심부에 파일 등 지반보강공사 선행이 불가피하여 후속 조경 공사도 지연
	창의어린이 놀이터 재조성	시설비	825,138	824,515	196,946	공사 대상 위치가 변경되어 기존 설치할 예정이었던 도급자 관급자재의 설치가 연도 내 집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월
	금천폭포공원 재정비	시설비	300,000	279,840	139,920	최적의 설계안 구상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으로 이월
	가산동 생활권 공원조성	시설비	9,750,000	2,178	9,747,82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이 지연
	새재미어린이공원 재조성	시설비	950,449	869,890	795,563	건축공사 공정 중 지반보강(파일) 추가 및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로 인한 공기 지연
	목화어린이 공원 재조성사업	시설비	30,000	27,383	13,691	공원 내 민방위 급수시설 축소 및 이전 관련하여 검토 과정 지연
	금천구 시흥계곡 공원조성	시설비	1,665,000	1,652,999	931,554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호암늘솔길 연장사업	시설비	3,540,162	3,510,463	315,109	테크로드 조성 구간 일부(홍산배드민턴장) 부지의 도시계획 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V. 검토의견

1. 세입·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결산액은 139억 9,160만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징수률은 94.3%이며, 지출액은 259억 9,980만원이며
-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6억 1,050만원이며
- 집행잔액은 14억 1,9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3.9%이며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보조금정산잔액 3억 9,130만원, 낙찰차액 2억 3,560만원, 지출잔액 7억 87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8,410만원임.

2. 예산의 전용

-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예산전용은 총 1건 2,300만원을 전용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른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이월사업비의 내역을 살펴보면,
 - 명시이월은 총 24건 70억 1,5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음.
 - 사고이월은 총 24건 135억 9,48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4. 검토의견

- 2021회계연도 푸른미래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불용율이 높게 나타난 바,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관계법령

☞ 예산·결산 자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0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11. 8. 4.]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오랜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정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 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11. 8. 4.]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